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도시교통의 수요관리를 위해 시장이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하여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하향조정 하고, 시장이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의 일부 지역이나 시설물에 대해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을 지정하려 할 때,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절차 대신 교통시설관리청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9678호, 2023. 8. 16. 시행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세부기준 마련(안 제26조제1항 개정)

시장이 납부 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부담금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는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600만원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납부 가능토록 허가

나. 특별관리구역 지정시 협의대상인 교통시설관리청 명확화(안 제33조제1항 신설)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계획 수립시 협의해야 할 교통시설관리청을 명확히 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지역’을 해당 특별관리구역 또는 시설물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반경 4km 또는 2km 이내 지역으로 규정

다.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정비 및 명확화(별표1 개정)

교통영향평가대상인 유인변전소를 소수인력이 상주하는 등 교통유발량이 미미한 점을 고려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교통영향평가 대상인 종교시설의 세부용도에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을 추가 명시

라. 인용 규정 정비(안 제14조 개정)

단순 자구 수정사항 정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3조제1항제8호”를 “법 제33조제1항제9호”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천만원”을 “600만원”으로, “5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천만원”을 “600만원”으로 한다.

제3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45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지역’이라 함은 해당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반경 4킬로미터 또는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별표 1 제2호가목2)의 세부용도란 중 “무인변전소”를 “변전소”로 하고, 같은 목 5) 세부용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한 사항) <u>법 제33조제1항 제8호</u>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4조(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한 사항) <u>법 제33조제1항 제9호</u>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제26조(분할 납부) ① 시장은 내야 할 부담금이 <u>500만원</u> 을 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를 허가할 수 있다.		제26조(분할 납부) ① -----		----- <u>300만원</u> -----
1. 내야 할 금액이 <u>1천만원</u> 이하인 경우에는 <u>500만원</u> 을 초과하는 금액		1. ----- <u>600만원</u> -----		----- <u>300만원</u> -----
2. 내야 할 금액이 <u>1천만원</u>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2. ----- <u>600만원</u>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3조(특별관리구역 지정계획 등의 수립) <신 설>		제33조(특별관리구역 지정계획 등의 수립) ① <u>법 제45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지역’이라 함은 해당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u>		

(생 략)	<u>리시설물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반경 4킬로미터 또는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u> <u>②</u>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연 락 처	(044) 201 - 3812